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29
------------	-------

제출년월일 : 2012. 5.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안 제4조의2 신설)

-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의해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 1)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5조제1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 2)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 비서관 또는 비서 임용

- 외국인 임용(초빙의 경우로 한정)

-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 등으로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

- 3)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신설)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다. 직권면직 사유 개정 및 절차 명시

1) 신체·정신상의 장애 조항 삭제(제9조제1호 삭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장애인 차별 시정)

2) 직권면직 사유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직권면직 절차 명시(안 제9조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직권면직 시킬 경우 미리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함
-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에 따라 직권면직 시킬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 정함
- 제9조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라.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 제10조 개정)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마. 별정직 임용자격기준 개정(안 제4조제3항, 별표 1 개정, 별표 2 신설)

바. 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 신설(부칙 제2조 신설)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안 전반)

3. 개정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행정안전부)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2. 4. 12. ~ 2012. 5. 2.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폐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2. 5. 3.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조 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으로 하며, “이 조례가”를 “이 조례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용이라함은”을 “임용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자에 있어서는 당해”를 “별정직 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를 “별표 2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임용절차등)”을 “(임용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마포구 단위 기관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단위 기관 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준용 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법제31조 각호”를 “법 제31조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휴직)”을 “(병역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휴직중인”을 “휴직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복직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의4(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구청장은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 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한다.

제3조(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비상대비 업무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화생방지도원	6급상당	·구청 화생방보호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상당)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행정관리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지도사	6급상당 (체육팀장)	·여가생활 계획의 수립 및 수행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도 ·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등 운영 ·여가생활 관련단체의 육성 지원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7급 또는 7급상당으로 3년 이상 체육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적격자로서 인정한 자	
	7급상당	·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8급 또는 8급상당으로 3년 이상 체육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8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생활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이상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면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9급 또는 9급상당으로 1년 이상 체육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6. 구의회 관리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구의회 전문의원	5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 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그 밖의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속기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작성 및 편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상당으로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8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작성 및 편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상당으로 해당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9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작성 및 편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7. 위생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영양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내식당급식관리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영양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졸업자이면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양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전문대학 영양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자이면서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양 관련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4.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양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8급 또는 8급상당으로 영양 관련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기타분야

직명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광고물 관리원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 기준의 변경시의 적용 : 분야별 자격 기준중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이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용자격
9급상당	<p>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p> <p>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p> <p>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p>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u> <u>공무원인사관리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u> <u>공무원 인사관리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p> <p>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p> <p>----- <u>이 조례로</u> -----</p>
<p>제3조(임용권자) ①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p> <p>② 제1항의 <u>임용이라함</u>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p>	<p>제3조(임용권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p> <p>-----.</p> <p>② <u>임용이란</u></p> <p>-----.</p>
<p>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p> <p>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p>	<p>제4조(임용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p> <p>-----.</p> <p>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해당</p> <p>----- 사람을 -----.</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 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유사 직무 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p> <p>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성·가정복지 상담원의 경우는 25세이상 40세 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p> <p>2.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p> <p>3.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p> <p>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내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p> <p>-- 별표 2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p> <p>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p> <p>제5조(임용 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p>
<u><신 설></u>	<p>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p>
<u><신 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 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p>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p>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u>서울특별시마포구 단위 기관내</u> 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전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단위 기관 내----- ----- -----. ----- -----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 ----- ----- -----.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u>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u>법 제31조 각호</u> 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 법 <u>제31조 각 호</u> ----- -----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9조(직권면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 <삭제>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盈 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2. ----- 갚 <u>소 등</u> ----- 과

현 행	개 정 안
<u>될 때</u>	<u>원이 된 때</u>
3. (생략) <u><신 설></u>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신 설></u>	4.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 었을 때
<u><신 설></u>	5. 그 밖에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 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 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 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 쳐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 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한 날로 한다.
<u><신 설></u>	
<u>제10조(휴직)</u>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 이 다음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 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 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 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 명 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u>제10조(병역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 사관리)</u>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 제5호에 따라 휴직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 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 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 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 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u>
<u>제10조의2(휴직기간)</u> <u>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u>	<u><삭 제></u>
<u>제10조의3(휴직의 효력)</u> <u>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u>②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u>	<u>제10조의3(휴직의 효력)</u> <u>① 휴직 중인 -----</u> ----- <u>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u> ----- ----- <u>지</u> <u>체 없이 -----.</u> <u>③ 제2항에 따라 -----</u> ----- <u>복직된다.</u>
<u>제11조(병역의무 휴직자의 결원보충)</u>	<u><삭 제></u>
<u>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단위기관 내에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u>	<u>제11조의2(근무성적의 평정)</u> <u>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u>

현 행	개 정 안
	<p>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p>
<u><신 설></u>	<p><u>제11조의3(시간제 근무)</u>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p> <p>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p>
<u><신 설></u>	<p><u>제11조의4(교육훈련)</u>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p>
<u>제12조(징계)</u>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u>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u>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p><u>제12조(징계)</u>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p>
<u>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u> (생략)	<p><u>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u>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신 설></u></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신 설></u></p>	<p><u>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u> 구청장은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 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한다.</p> <p><u>제3조(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된 것으로 본다.</p>